

「구미시 모자·부자보건사업 및 출산축하금 등 지원에
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김영태 의원 외 6인

2. 제안이유

- 출산지원금과 관련된 별도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, 기존 조례에 불필요한 조항 삭제 등 전면개정을 통해 효율적으로 조례를 운영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조례명에 관한 사항 정비
- 첫만남이용권, 출산축하금 관련 조항 삭제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모자보건법」 제3조의2, 제11조
 - 「지역보건법」 제11조
 -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출산축하금, 첫만남이용권 등 출산지원금과 관련된 별도의 조례(「구미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)가 상정됨에 따라, 조례명의 변경과 관련 조문의 삭제를 위해 발의된 전부개정조례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2024년 7월 부서개편으로 첫만남이용권, 출산축하금 등 관련 사무가 구미보건소에서 미래교육돌봄국 소관 업무로 이관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써 법률상 문제는 없음.
- 다만, 조례 개정의 취지가 무색하지 않도록 집행부서에서는 난임 극복 지원사업, 출산 지원사업 등 가족의 보건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출생 장려를 위한 부서 간 사업 연계에 대한 구상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